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 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일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81호(號)

시마바라철도주식회사선발(島原鐵道株式會社線發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·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線) 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 착(著) 화물연대운송규칙(貨物連帶運送規則)은 아래 [左]와 같이 정(定)함.

1926(大正 1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91호(號) 시마바라철도선발(島原鐵道線發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및 만철선(滿鐵線) 착(著) 화물연락운수취급규칙(貨物聯絡運輸取扱規則)은 본(本) 고시(告示) 시행(施行)과 동시(同時)에 이것을 폐지(廢止)함.

1933(昭和 8)년 10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  
시마바라철도주식회사선발(島原鐵道株式會社線發)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·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線) 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 화물연대운송규칙(貨物連帶運送規則)

제1조(條) 시마바라철도주식회사(島原鐵道株式會社: 이하 시마바라[島原]라 칭[稱]함)선(線)과 조선총독부철도국(朝鮮總督府鐵道局: 이하 국[局]이라 칭[稱]함)선(線: 철도성선[鐵道省線] 이사하야역[諫早驛]·부산영업소[釜山營業所] 간[間] 경유[經由]),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(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: 이하 북선[北鮮]이라 칭[稱]함)선(線: 철도성선[鐵道省線] 이사하야역[諫早驛]·부산영업소[釜山營業所] 간[間] 및 국선[局線] 부산·수성[輸城] 역[驛] 간[間] 경유[經由]) 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: 이하 만철[滿鐵]이라 칭[稱]함)선(線: 철도성선[鐵道省線] 이사하야역[諫早驛]·부산영업소[釜山營業所] 간[間] 및 국선[局線] 부산·단동[安東] 역[驛] 간[間] 경유[經由])과 화물(貨物)의 연대운송(連帶運送)을 하는 경우는 본(本) 칙(則)에 의(依)함.

제2조(條) 연대운송(連帶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하는 화물(貨物) 및 취급역소(取扱驛所)는 아래 [左]와 같이 함.

1 취급화물(取扱貨物)

면직물(綿織物)

2 취급역소(取扱驛所)

발역(發驛) 시마바라선(島原線) 시마바라역(島原驛)

1) 역자 주: 원문에는 9로 오기(誤記)되어 있다.

착역(著驛) 국선(局線) 각(各) 역소(驛所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북선선(北鮮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만철선(滿鐵線) 각(各) 역(驛: 간이역[簡易驛]을 제[除]함)

제3조(條) 전(前) 각(各) 조(條)의 외(外) 1933(昭和 8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14호(號) 철도성선(鐵道省線)과 조선(朝鮮) 내(內) 철도(鐵道) 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(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) 간(間) 화물연대운송규칙(貨物連帶運送規則)을 준용(準用)함.